

부산광역시사하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안사유

- 자연재해대책법제 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 규정 신설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관계법령
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

3. 주요골자

-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한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신설에 따른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를 전문개정
 - ▷ 현행조례는 당해년도 적립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, 그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
 - ▷ 개정조례는 매년 적립된(발생이자포함)기금의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, 그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재해예방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건은

재해대책 적립기금방식을

- 현행 당해년도 적립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예치토록 되어있는 기존방식을
- 매년 적립된(발생이자포함)기금의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예치토록 변경하여 관리하므로써

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재해예방은 물론 피해최소화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

특히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신설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 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2003년 12월

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 금 배